

안 내

-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·농지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포함합니다. 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합니다)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.
-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: 농지공간포털(<https://njl.mafra.go.kr>)
 - ※ 본인확인 방법: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인증
- 인터넷지로 납부(공인인증서 필요):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지로번호 입력(OCR 7001293) 후 이용기관 확인(한국농어촌공사) → 납부고객조회번호(통지번호), 납부금액, 체크번호, 휴대전화번호 → 계좌이체
-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